

수원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4가단54241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안형윤

피 고 A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재동

변 론 종 결 2024. 10. 15.

판 결 선 고 2024. 11. 12.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23. 5. 2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B에게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2023. 5. 26. 접수 제13987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이후 C는 원고로부터 각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아래 대출금액을 각 대출받았다. B은 각 보증계약에 의하여 C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기한 (연장기한)	보증금액 (대출금액)	비고
2015. 6. 2.	D	2016. 6. 2. (2023. 5. 26.)	100,000,000원 (1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1보증'이라 함.
2015. 6. 30.	E	2016. 6. 30. (2023. 5. 26.)	100,000,000원 (1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2보증'라 함.
2016. 3. 16.	F	2017. 3. 16. (2024. 3. 8.)	608,000,000원 (640,000,000원)	이하 '이 사건 3보증'이라 함.
2022. 12. 15.	G	2023. 12. 15.	20,700,000원 (23,000,000원)	이하 '이 사건 4보증'라 함.
2023. 3. 10.	H	2024. 3. 8.	102,600,000원 (114,000,000원)	이하 '이 사건 5보증'라 함.

나. 중소기업은행이 2023. 5. 24. 이자연체를 이유로 한 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 한다)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원고는 2023. 12. 8. 위 은행에 이 사건 1보증 내지 5보증에 따라 총 935,029,078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이 사건 1보증과 관련하여 2,550,410원을 회수하였고, 그 외 추가보증료 1,730,950원, 법절차비용 4,308,590원이 발생하여 구상금채권액 총 938,518,208원이 발생하였다.

다. B은 2023. 5. 2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I, 채권최고액 57,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2023. 5. 26. 접수 제139876호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395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에 근거하면, ① B과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1보증 내지 5보증 계약이 체결되어 그에 기한 대출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고, ② 이 사건 근저당권계약을 체결한 2023. 5. 26.로부터 불과 2일 전인 2023. 5. 24. 이 사건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③ 원고가 2023. 12. 8. 대위변제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1) 관련법리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물상보증인이 되는 행위는 부동산의 담보가치만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거나 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정보시스템운영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2 지분 (가액 267,500,000원), 평택시 J 전 429㎡, K 전 476㎡, L 전 90㎡ 이 존재하는 사실(총 가액 348,250,000원)이 인정되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익산기술평가센터)에 대한 구상금채무 932,478,668원, 원고(평택기술평가센터)에 대한 구상금채무 335,750,000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265,274,763원,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407,795,843원 등이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I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물상담보를 제공한 것은 채권의 공동담보 부족을 심화시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의 부족상태가 심화되어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가진 구상금채권의 주채무자는 C이며, B은 연대보증인이므로, 그 무자력 판단을 위해 C 재산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B의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B이 피고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위 금원을 사업상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로 사용하는 등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신규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상 사용하기 위함이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기는 하나(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광국은 신규자금 융통이 아닌 기존 채무의 이자지급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고, 더욱이 위 대출채무는 김광국 개인이 아닌 법인 C가 부담하는 채무인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B의 무자력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는 2020. 11.경부터 B이 운영하는 M 주식회사와 대출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위 회사는 2023. 4.경 그 대출이자를 연체하고 있던 점,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23. 6. 22.자 답변서를 통해 M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407,795,843원을 회수하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에선 B의 배우자인 I과 48,000,000원의 대출거래약정을 맺고, 그 물적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목적과 경위가 불분명한 점, ③ 이 사건 보증사고가 발생한지 불과 2일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점, ④ 금융기관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의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철

별지